결성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[결성계획서]

Ⅰ - 1. 조합명 : ○○ 개인투자조합 / ○○ 투자조합

예) ○○ 개인투자조합 3호, ○○ 투자조합 1호, ○○ 조합 2호

※ 사용 불가능한 조합명 : (법상 사용 불가)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
(창투사 등과 혼동) ○○홀딩스, ○○파트너스, ○○인베스트먼트

-> VICS에 등록하는 조합명과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일치(띄어쓰기 등)

Ⅰ - 4. 존속기간 : 5년 이상

예1) 조합설립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□년 (예. 5년)

예2) 본 조합의 존속기간은 202□년 □월 □□일까지 (예. 2026년 12월 31일)

※ 처리기간이 최대 14영업일이 소요, 존속기간 5년 산정 시 신청일부터 승인일까지 고려 필요

Ⅰ - 5. 조합원 구성 : 총 조합원 49인 이하 (구체적인 인원 명시)

총 조합원(49인 이하) = 업무집행조합원(□명) + 유한책임조합원(49인 이하 - □명)

예1) 총 조합원(23인) = 업무집행조합원(1인) + 유한책임조합원(22인)

예2) 총 조합원(45인) = 업무집행조합원(3인) + 유한책임조합원(42인)

Ⅱ - 1. 출자금 총액 : 1억원 이상
출자 1좌의 금액 : 1백만원 이상

Ⅱ - 3. 조합원의 모집계획 : 사모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1~2줄 서술

예1) 기존에 투자를 같이했던 지인들을 (사모의 방식) 조합원으로 모집할 예정

예2)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춘 지인들로 구성할 예정(사모방식)

※ 사모(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) : 50인 미만의 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(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)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(이 경우 50인의 산출은 청약을 권유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청약을 권유한 자도 합산함)

Ⅳ. 조합 재산배분계획 : 관리보수비 비율, 목표수익률 등의 내용은 조합원 동의하에 수정 또는 추가 가능

Ⅴ. 업무집행조합원 현황 : 학력 및 경력을 작성하며, 관련 증명서 제출 필요

※ 결성계획 승인 이후, 조합 등록 이전에 투자할 경우는 조합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 반드시 조합 등록 이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
[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]

1. 공동 GP의 경우, GP별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모두 제출
2. 조합원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의 추가 동의 서명 및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첨부 필수

[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(해당시)]

※ 개인 자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4가지 유형 중 최소한 1가지 유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조합 등록이 가능

1. 전문개인투자자

★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: 유효기간 확인필요

2.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 보유 요건 충족 여부

* 조합 운영 경력은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합의 운용기간을 합산하므로 복수의 조합을 운용한 경우는 조합별로 각각 현황을 기입 요망

예시) 복수조합 경력 계산

구분	개인투자조합명	조합 등록일	조합 해산일(예정일)	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한 기간(조합등록 신청일 기준)
1	○○○	'22.03.31	'27.03.30	'22.03.31~'23.04.01 (12개월)
2	○○○	'22.03.31	'27.03.30	'22.03.31~'23.04.01 (12개월)
3	○○○	'20.03.31	'25.03.30	'20.03.31~'23.04.01 (36개월)

※ 12개월+12개월 +36개월 = 총 60개월 (운용조합별 개별합산)

★ 운용 경력 증빙자료 :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

3.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중 해당 여부

업무 수행 경력 요건 내용	충족 여부 (해당되는 경우에 '○' 표시)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	-
1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	
2)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	
3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	
4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	
5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	
6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	

★ 재직(경력)증명서 : 세부 업무 내역, 법인인감날인 포함
★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: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하여 제출

4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내역

※ 교육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교육 수료증 별첨 필수

[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관련 서류 (해당시)]

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: 등록증, 정관(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)

★ 기술지주회사 : 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, 정관(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)

★ 창조경제혁신센터 : 고유번호증

★ 창업기획자 : 사업자등록증